인천광역시검단구 공고 제2026-499호

#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, 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1. 11.

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

1. 공고기간 : 2026. 11. 11. ~ 2026. 11. 27.
2. 공고대상 : 붙임참조
3. 공고내용 :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4. 공고사항
   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및 제37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을 1년 이상 장기 미수검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나. 이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, 임시운행 시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.
   다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제22의2호에 따라 운행정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,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.
5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(☏032-726-6802)

[붙임] 자동차운행정지명령 공고 대상

| 연번 | 자동차 등록번호 | 차명 | 소유자 | 사유 |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18저1046 | K7 | 심*원 | 검사 미필 | 2026.11.11. |
| 2 | 87두7032 | 포터Ⅱ활어운반차 | 이*근 | 검사 미필 | 2026.11.11. |
| 3 | 23우4233 | 체어맨 | 한*희 | 검사 미필 | 2026.11.11. |
| 4 | 72서2839 | 그랜드스타렉스캠핑카 | 주**********사 | 검사 미필 | 2026.11.11. |
| 5 | 66조8045 | 스포티지 | 주******스 | 검사 미필 | 2026.11.11. |
| 6 | 39수2544 | SM7 | 홍*철 | 검사 미필 | 2026.11.11. |